

마음이 모여 마을이 됩니다!

성북구보건소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(친구야포차)

1. 보건위생과 - 11620(2015. 7. 14.)호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(영업소 폐쇄) 통지 된 내용입니다.

2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폐업되었으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에 앞서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, 청문에 불출석(의견 미제출)하였기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.

○ 처분업소 내역

업종	일반음식점	신고번호	1993*****
업소명	친구야포차	소재지	성북구 장월로26길9(장위동)
영업자	감영훈	주민등록번호	*****
위반사항	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휴업하고 영업하지 아니함.		
처분내용	영업소 폐쇄		
위반근거	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제1호		
처분근거	식품위생법 제75조 제3항 제1호		

붙임 1. 행정처분명령서 1부.

2. 청문조서 및 주재자 의견서 1부. 끝.

주무관 **박현숙** 식품위생담당 **이창희** 보건위생과장 **김근선** ★보건소장 **황원숙** ^{07/30}

협조자

시행 보건위생과-12655 () 접수 ()
우 136-13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 (하월곡동) / <https://bogunso.seongbuk.go.kr>
전화 02-2241-6164 /전송 02-2241-6611 / 부분공개(6)